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8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정순기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8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하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장차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 대비 및 행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(안 제2조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조례 통합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 삭제(현행 제8조제1항제7호 삭제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지침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9조 및 제2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# 나. 검토의견

#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개별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 디자인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행정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##### 2) 주요 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(안 제2조)
  - 공공디자인 범위에 범용디자인, 사회문제해결디자인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하여 정책 대상을 확장함.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  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를 준용하여 기본원칙을 신설함
  -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, 구의 역사성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,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
- 조례 통합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 삭제(현행 제8조제1항제7호 삭제)
  - 위원회 심의사항 중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지침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9조 및 제23조)

##### 5) 부칙 안 제2조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는 폐지함.
- 제정 : 2020. 7. 17
- 유니버설디자인의 통일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유니버설디자인 환경적용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장애인·노인·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

#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도시 공공디자인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